

낙동강수계법 확정

지방자치단체별 오염총량관리제도를 의무화하는 등 낙동강수계특례법 환경부안이 최근 확정됐다. 확정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상수원댐 주변지역중 일정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·관리하고 산업단지내 완충저류시설을 의무화하며, 폐수처리시설 운영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등을 포함하고 있다. 동법안은 작년 12월 30일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 (위원장 : 국무총리, 위원 : 관계부처장관 및 시·도지사) 에서 확정된『낙동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』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며, 금년 6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. 이에 본지는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.

<편집부>

1. 수질오염 사전예방

▶ 낙동강수계에 오염총량관리제 의무 시행

- 환경부장관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천구간별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한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을 수립·시달하고, 시·도지사는 이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, 시장·군수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각각 수립·시행
-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장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할 수 있으며,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유량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·징수함
-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여 도시개발, 산업단지, 공장 등의 인·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,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,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
- 다만, 하간구간별 목표수질을 달성하여 유지하고 있는 지역은 그 시행을 유보함

▶ 상수원 인접지역 관리 강화

- 주요 취수원 지역에 대하여는 일정기간내에 시장·군수가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않을

경우에는 시·도지사가 직권으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토록 함

- 다만,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노력으로 취수장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수질을 1급수 (BOD 1mg/ℓ 이하) 또는 취수원의 수질 보다 양호하게 유지하는 상류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유보
- 낙동강 본류 및 제1지류로부터 일정거리이내의 지역에서 도시, 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기타 일정규모이상의 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수질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녹지조성 등 수질오염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

▶ 수변구역의 지정·관리

-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 상류의 호소주변 일정거리 이내에는 오·폐수를 다량배출하는 음식점, 숙박시설, 목욕탕, 공장, 축사, 공동주택, 콘도미니엄 등의 신축을 금지
- 기존 시설에 대하여는 오·폐수 처리기준을 배로 강화(BOD, SS 20 → 10mg/ℓ) 함

2. 수질오염 사고예방

▶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

-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일정기간 저류

정칙 - I

할 수 있는 원충저류시설을 반드시 설치토록 하여 평상시에도 자연정화기능을 갖도록 하고 사고시에는 폐수를 저장하여 하천본류 오염을 차단하는 저류지 역할을 담당

▶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 강화

- 유독물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제조·보관·저장·사용하는 자는 수질오염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집수시설, 저류시설, 유출차단시설 등을 갖추어야 함
-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관련 자료 및 배출량저감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, 배출량저감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

3. 주민 및 민간단체 등 지원확대

▶ 주민지원사업 확대

- 상수원관리지역 뿐 아니라 댐주변지역 및 주민의 자율적 노력으로 수질이 I 등급으로 개선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주민에 대한 한 소득증대사업, 생활환경개선사업, 육영사업 등 주민지원사업비 지원

▶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제 도입

-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내로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물이용부담금에서 동 시설의 운영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

▶ 지도·단속 강화 및 민간활동 지원

- 낙동강수계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 전문가 및 민간단체의 수질보전활동이나 수질감시활동을 물이용부담금으로 지원

4. 물 수요관리 강화 등

▶ 물수요관리목표제 등 수요관리 강화

- 시·도지사는 관할 시·군·구별 물수요관리목표를 정하고,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함

▶ 산업단지 배출수 재이용 및 지하수 이용 확대

- 산업단지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배출수에 대한 연차별 재이용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함
- 지하철, 통신구, 대형빌딩 등의 공사과정 또는 공사이후 지속적으로 용출되는 지하수에 대한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한 시설 등을 갖추어 하천의 유지용수, 도시 청소용수, 공업용수 등으로 이용하여야 함

5. 물이용부담금 제도 도입

▶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지역

- 낙동강수계 전역에 대하여 상·하류지역 구분 없이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함. 다만, 댐주변지역은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함

▶ 물이용부담금의 용도

- 주민지원사업비
-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
- 상수원관리지역, 수변구역 등의 토지 매입 및 수변녹지대 조성사업 지원
-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로 처리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·운영자에 대한 지원
- 민간 수질감시 및 보전활동 사업에 대한 지원 등

6. 낙동강유역관리위원회 설치

- 환경부장관을 위원장으로 낙동강수계 6개 시·도지사 및 건교부차관 및 수자원공사 사장 등으로 구성되는 「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」를 설치하여 유역내 주요 물관리정책에 대한 협의·조정 기능을 부여 **환경保全**